

www.ebs.co.kr

EBS 제작가이드라인

EBS 제작가이드라인

2024. 6. 13.

본 <EBS 제작가이드라인>은
2024년 6월에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BS 제작가이드라인 개정본 참여진

발행인 김유열 사장 (EBS)

기획·편집진 홍정배 센터장 (EBS 정책기획센터)
봉미선 부장 (EBS 정책기획센터 정책기획부)
이효림 차장 (EBS 정책기획센터 정책기획부)

외부 검토위원 임종수 교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무순 심영섭 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내부 검토위원 안소진 부장 (EBS 방송제작본부 방송제작기획부)
*무순 문현식 부장 (EBS 디지털학교교육본부 디지털교육기획부)
김호문 차장 (EBS 융합기술본부 기술기획부)
김형준 부장 (EBS 편성센터 편성기획부)
최원석 부장 (EBS 영상아트센터 공간디자인부)

EBS 제작가이드라인 구성

▣ EBS의 4개 편성 방향, 7개 제작규범, 3개 하위 목차(세부 목차)로 구성되었으며 편성방향 및 제작규범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편성방향(4개)

- I. 창의적 미래지식의 창출
- II. 생애교육의 실현
- III. 민주적 교육 발전
- IV. 문화격차의 해소

※ 제작규범(7개)

1. 유아/어린이/청소년
2. 지식과 역량
3. 정체성과 글로벌
4. 정확성과 공정성
5. 다양성과 포용
6. 디바이드의 극복
7. 자유와 책임

▣ 편성방향 및 제작규범은 다시 아래와 같이 목차로 재구성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 하였습니다.

I. 창의적 미래지식의 창출

1. 유아/어린이/청소년

II. 생애교육의 실현

2. 지식과 역량 3. 정체성과 글로벌

III. 민주적 교육 발전

4. 정확성과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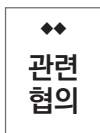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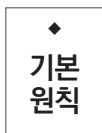
IV. 문화격차의 해소

5. 다양성과 포용 6. 디바이드의 극복

총론

7. 자유와 책임

▣ 제작규범의 하위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천 부분은 다시 세부목차들로 구성됩니다.)

Contents

I

창의적 미래지식의 창출

13

1. 유아/어린이/청소년

13

◆ 기본원칙

14

◆◆ 관련 협의

14

◆◆◆ 실천

14

유아 프로그램

15

유아·어린이·청소년 연령 및 보호시간대 등

15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6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용 수준

17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

20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21

학교 교육의 보완

22

교육환경 변화

22

학교 외 교육방송

23

유아·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트랜스 미디어

II

생애교육의 실현

27

2. 지식과 역량

27

◆ 기본원칙

28

◆◆ 관련 협의

28

◆◆◆ 실천

28

평생교육

28

직업교육

29

노하우·지식

29

정보 프로그램

30

트랜스 미디어의 적용

31

3. 정체성과 글로벌

31

◆ 기본원칙

32

◆◆ 관련 협의

32

◆◆◆ 실천

32

한국, 한국인

33

글로벌 문화 정체성 함양

34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달

35

남북한 교류

III

민주적 시민교육의 수행

39

4. 정확성과 공정성

39

◆ 기본원칙

40

◆◆ 관련 협의

41

◆◆◆ 실천

41

공정성과 균형성

42

사실과 의견

42

가짜뉴스

43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44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45

대담·토론 프로그램

46

객관성(정확성)

46

출처명시

47

통계 및 여론조사

50

오보와 자율규제

51

방송 혼동 방지와 방송사고에 대한 대응

IV

문화격차의 해소

55

5. 다양성과 포용

55

◆ 기본원칙

56

◆◆ 관련 협의

56

◆◆◆ 실천

56

사회통합

58

성 평등

59

문화의 다양성 존중

59

장애인 출연자에 대한 편의 제공

60

장애인 출연자

61

장애인의 묘사

63

노인

63

표현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의 사과와 정정

64

6. 디바이드의 극복

64

◆ 기본원칙

65

◆◆ 관련 협의

65

◆◆◆ 실천

65

사회의 소외계층 배려

66

트랜스 미디어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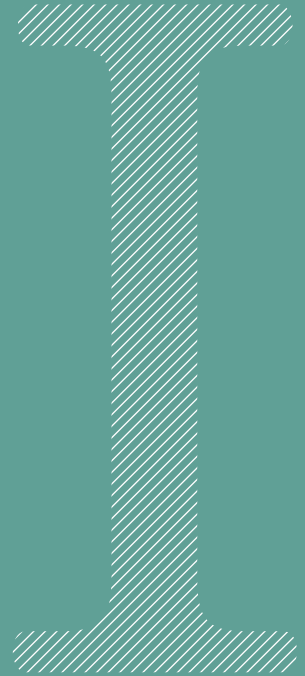
67

다양한 플랫폼 유통

총론

71	7. 자유와 책임
71	◆ 기본원칙
72	◆◆ 관련 협의
72	◆◆◆ 실천
72	방송의 품위
73	사생활 보호
74	취재원 보호
75	명예훼손 금지
78	인권 보호
79	공개 금지
80	범죄사건 보도
81	공개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
82	초상권의 침해
83	인격권 침해 방지 사항
84	법령의 준수
84	표현의 윤리성
84	생명존중 표현
85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항
86	성 표현
88	폭력 묘사
88	가학적·피학적 묘사
89	충격·혐오감 표현
90	범죄 및 약물묘사
91	자살묘사
92	재연·연출
93	의료행위 등
97	방송언어
100	광고효과
104	방송광고와의 구별
106	중계방송 등
108	간접광고
110	가상광고
112	방송광고 종류별 위반 사례
113	시상품
114	상품판매
114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115	유료정보서비스
116	개인정보보호
116	동물권 인식
117	친환경 제작

창의적 미래지식의 창출



1. 유아/어린이/청소년

- ◆ 기본원칙
- ◆◆ 관련 협의
- ◆◆◆ 실천
 - 유아 프로그램
 - 유아·어린이·청소년 연령 및 보호시간대 등
 -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용 수준
 -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 학교 교육의 보완
 - 교육환경 변화
 - 학교 외 교육방송
 - 유아·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트랜스 미디어



I

창의적 미래지식의 창출

EBS 설립취지인 학교교육의 보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1세기 창의적인 미래지식을 창출하고 그에 걸맞은 올바르고 역량 있는 미래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능방송과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한다.

1. 유아/어린이/청소년

◆ 기본 원칙

유아·어린이·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유아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수동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모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일원으로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방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는 어린이 현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건전하고 따듯한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할 권리와 함께 인류평화를 위한 세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부여받을 권리에서 건전한 문화·예술활동,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삶의 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남녀평등과 생명 존중을 소중히 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 존중감을 키워야 한다. EBS는 이 같은 유아·어린이·청소년(infant, children & adolescent)의 사회적 권리와 책임에 맞는 다양하고도 양질의 교육 및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 좁게는 수능방송과 같은 학교교육의 보완, 넓게는 학교 외 다양한 여가와 문화, 지식, 정체성 등 지적, 정서적 계발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 보급한다.

- 유아·어린이·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여, 그들의 관심과 정서를 존중하는 방송을 구성한다.
- 유아·어린이·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송 환경을 조성한다.
- 유아·어린이·청소년이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 소외된 유아·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배려한다.
- 어린이·청소년의 학교 교과과정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교육을 보완한다.
- 유아·어린이·청소년이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관련
협약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평일: 7시~9시, 13시~22시,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7시~22시)의 프로그램은 표현 등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예외를 요청하거나 특별히 거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할 것을 권장한다.

이 외에도 각 국가나 문화마다 허용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을 제작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관련 책임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실천

▶ 유아 프로그램

1. 유아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지도 하에서 유아들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이지 않은 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유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행동들은 잠재적으로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삼키거나 폭력적 성향을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삼간다.
3. 유아들이 전형적인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들은 피하도록 한다.
4. 모든 프로그램은 유아의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을 장려한다.

유아·어린이·청소년 연령 및 보호시간대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유아”는 2세~8세 사이의 자를 말한다.
-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가족시청시간대”는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은 7시부터 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 기간(하절기 7.16~8.31, 동절기 12.18~2.7.) 동안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 유아·어린이·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한다.
2. 유아·어린이·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유아·어린이·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유아·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유아·어린이·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한다.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수용 수준

1.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유아·어린이·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취하도록 한다.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유아·어린이들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폭력적 내용이나 폭력을 희화화하거나 용인하는 내용, 동물학대, 자살, 자살기도, 자해, 섭식장애, 음주, 흡연, 마약물 복용, 선정적인 장면, 과도한 노출, 도박, 부적절한 언어 등은 유아·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4. 유아·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5. 유아·어린이·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청소년과 관련된 반사회적 이슈나 범죄행위를 촬영할 때 청소년 개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한다.
7. 유아·어린이·청소년이 출연하거나, 유아·어린이·청소년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유아·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유아·어린이·청소년이 출연하거나, 유아·어린이·청소년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

1. 유아·어린이·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2. 유아·어린이·청소년을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안 된다.
3. 유아·어린이·청소년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한다.
4. 유아·어린이·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프로그램에서 묘사하여서는 안 되며,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5. 유아·어린이·청소년의 출연은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6. 유아·어린이·청소년과 인터뷰하는 경우,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그 유아·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한다.
7. 어린이와 청소년이 수업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8.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유아·어린이·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유아·어린이·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9. 방송에 참여한 유아·어린이가 안전한 상황 속에서 방송에 참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유아·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아·어린이들이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 인솔자나 안전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두어 안전사고를 대비하도록 한다.
10. 출연한 유아·어린이·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사전설명을 한다.
11. 유아·어린이·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은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유아·어린이·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12. 유아·어린이·청소년이 프로그램 출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작 담당 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는 제작 전, 제작 중, 제작 후에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하도록 한다.
13.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에게 기본적으로 경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항상 출연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14.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금하도록 하며, 출연자가 신체적인 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정신적 폭력, 성폭력, 학대, 착취, 괴롭힘, 비하 등의 문제를 겪지 않도록 제작 부서 및 관련 부서는 예방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6.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가 건강상 응급상황이거나, 혹은 건강상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의심이 들면 해당 부서 책임자 및 담당자는 즉각적으로 유관 부서 등에 사안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7.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제작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자는 제작 과정에서 제작 현장 및 제작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여야 한다.
18.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가 출연하는 스튜디오 또는 촬영 장소는 위생적이고 안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9.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정신적·신체적 보호를 위해 적절한 근로시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합의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정신적·신체적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휴식시간,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1.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수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2.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 부서를 숙지하고, 지정된 부서 및 담당자를 유아·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1.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안 된다.
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는 때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등급분류)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1. “모든연령시청가”라 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한다.
2. “7세이상시청가”라 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3. “12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4. “15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5.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 학교 교육의 보완

1. 어린이·청소년의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한다.
2. 과외의 활동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양질의 보충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한다.

교육환경 변화

1. 변화된 학교 교육 환경에 맞는 교육 방송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2.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3. 복잡하고 어려운 과목의 경우 학습자가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4.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방적인 암기 위주의 지식 전달이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하게 제시된 지식을 상호 참고할 수 있는 방송내용이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학교 외 교육방송

1.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외에 어린이·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식 전달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 정서와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한다.
3.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방송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고지하도록 한다.
4.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노력한다.

유아·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트랜스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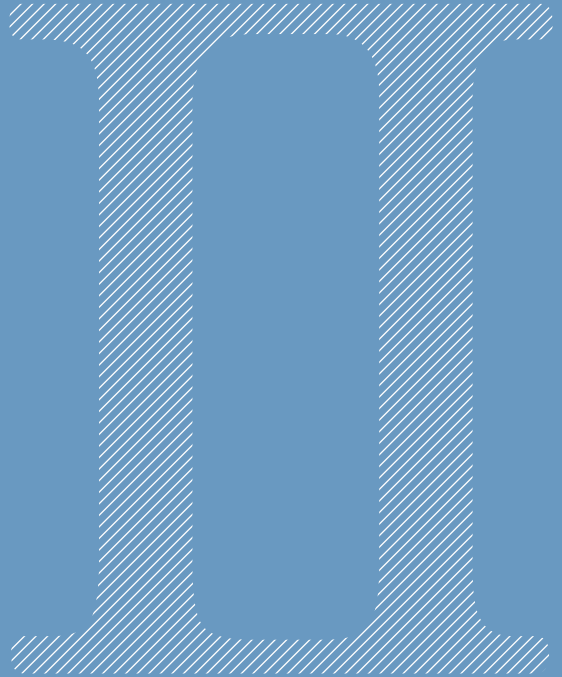
1. 유아·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도록 한다.
2. OTT(Over The Top),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활용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분절화된 콘텐츠 구성을 고려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3. 융합형 미디어에서 서비스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4. 사회 소외계층 유아·어린이·청소년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다양화하도록 노력한다.

참고 사항

트랜스 미디어

트랜스 미디어란 초월을 의미하는 '트랜스(trans)'가 '미디어(media)'와 결합된 합성어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미디어 간에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전통적인 미디어인 방송, 신문, 서적, 라디오 등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OTT(Over The Top)와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새로운 미디어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트랜스 미디어는 바로 이러한 미디어, 기술,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미디어의 스토리와 포맷 등이 다변화되는 개념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미디어에서 활용되었던 스토리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다변화된 방식으로 제작되고 유통되는 개념이자 현상인 것이다.

생애교육의 실현



2. 지식과 역량

- ◆ 기본원칙
- ◆◆ 관련 협의
- ◆◆◆ 실천
 - 평생교육
 - 직업교육
 - 노하우·지식
 - 정보 프로그램
 - 트랜스 미디어의 적용

3. 정체성과 글로벌

- ◆ 기본원칙
- ◆◆ 관련 협의
- ◆◆◆ 실천
 - 한국, 한국인
 - 글로벌 문화 정체성 함양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달
 - 남북한 교류



II

생애교육의 실현

고령인구의 증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해 직업 재교육은 물론 유치원에서 노치원에 이르는 생애주기(life cycle)별 교육 등을 목표로 한다. 각종 다큐멘터리와 직업과 그에 파생된 관련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지식과 역량

◆ 기본 원칙

지식은 인공지능 데이터 사회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자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적인 생산양식은 현실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컴퓨터 기반의 논리적 처리장치를 통해 목적하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지식은 인간과 자연, 사회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환경에서 생산되는 수행적 지식과 통찰적 지식 모두를 일컫는다. 이 같은 지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상과 접목되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새로운 문제들을 창출하기도 하는 역량으로 작용될 수 있다.

EBS는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미래지향적 생산양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분야별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은 물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연결한 창의적 해석, 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역량적 사고를 넓히는데 기여한다.

-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비판적 이해 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 시청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
-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재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시청자들에게 생애주기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업과 관련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관련
협의를

지식과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담당자 외에 해당 내용을 담당하고 확인할 수 있는 교육 담당자와 접촉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
실천

▶ 평생교육

1. 시청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정보 지식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한다.
2. 과학에 입각한 지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증명되지 않는 내용을 다룰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고지하도록 한다.

▶ 직업교육

1.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가 아님을 인지하고 다양한 직업의 소개는 물론 그에 따른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노력한다.
2. 특정 직업에 대한 사실이 미화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노하우·지식

1. 제공하는 노하우·지식은 대중적이면서 과학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다양한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며,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정보 프로그램

1. 정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시청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방적인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정보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해석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4. 시청자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대상 시청자들의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한다.
5. 단순 지식의 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 트랜스 미디어의 적용

1. 교육·지식 프로그램이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교육·지식 프로그램이 OTT, SNS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제작 방식을 고려한다.
3. 교육·지식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교육·지식 플랫폼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3. 정체성과 글로벌

◆ 기본 원칙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 자유무역과 전지구적 이동성의 증가로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하지만 글로벌화는 개별 지역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견고히 하면서 전지구적 상호작용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체성은 단순히 국가 정체성으로 한정되지 않고 경제 정체성, 문화 정체성, 교육 정체성 등 우리 사회의 '나'라는 주체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통해 얻어지는 동시대(contemporary)의 답이다. 경제, 국가, 문화의 정체성(identity)은 글로벌(global)과 동전의 양면과 같다.

EBS는 교육의 범주에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는데 기여할 책무를 가진다. 이를 위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물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시의성 있게 안내하고 소개한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국제적 감각을 높이는 편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문화를 안내함은 물론 동시대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세계를 폭넓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관점을 제공한다.

◆◆
관련
협의를

국제적 사안의 경우, 단순한 편성 책임자 외에 보도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책임자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또한, 다루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확인이 힘든 경우 관련 책임자와 접촉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노력한다.

◆◆◆
실천

▶ 한국, 한국인

1. 한국인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노력한다.
2. 국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 상황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시청자가 스스로 국가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3. 한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문화 정체성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국내외 변화에 발맞춰 자발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 및 문화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교육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글로벌 문화 정체성 함양

1. 글로벌 이슈를 다룰 때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최대한 발현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글로벌한 감각과 지역적 감각이 동시에 들도록 노력한다.
2. 시청자들이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글로벌 지역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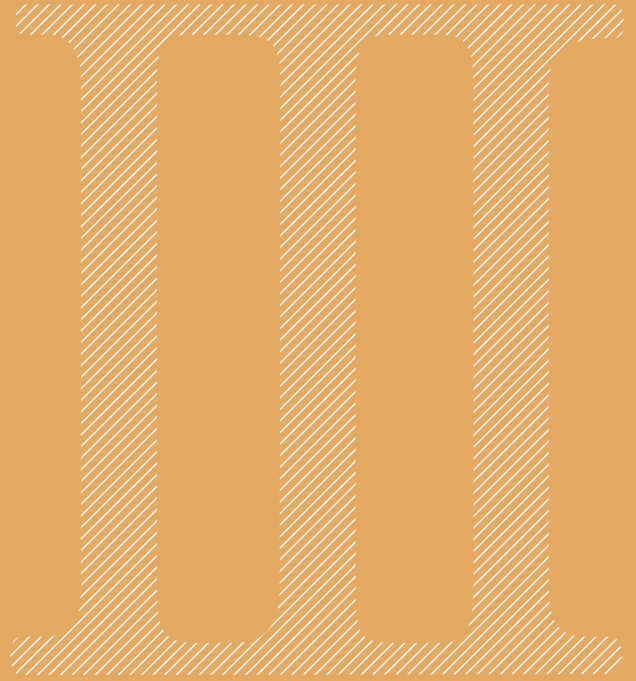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달

1. 다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취재·제작하도록 하며, 사회 실상이 정치적 의도나 여타 다른 의도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2. 외부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대한 사실 검증을 하도록 한다.
3. 다른 나라의 참상이나 풍문에 대해서는 선정적인 보도를 지양한다.
4. 국제적 문제는 주변국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어느 국가나 단체에 편향적인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
5.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 해결과 세계의 균형발전으로 인류의 복리를 도모하는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우리 문화와 사회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묘사하여 전달하고, 한류 등 문화콘텐츠의 확산과 공유를 선도하도록 노력한다.
7.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을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새롭고 건전한 해외 문화를 소개하도록 노력한다.

▶ 남북한 교류

1.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2.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남과 북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대북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대북사업 보도 시 사업 진행 여부를 다각적으로 확인하여 보도한다.
4. 북한 이탈주민 및 귀순자 관련 인터뷰나 프로그램 제작 시 이들의 신변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5. 북한 TV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정부 기구에 문의하여 사용료 등 이용 절차를 확인하도록 한다.

민주적 시민교육의 수행



4. 정확성과 공정성

- ◆ 기본원칙
- ◆◆ 관련 협의
- ◆◆◆ 실천
 - 공정성과 균형성
 - 사실과 의견
 - 가짜뉴스
 -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 대담·토론 프로그램
 - 객관성(정확성)
 - 출처명시
 - 통계 및 여론조사
 - 오보와 자율규제
 - 방송 혼동 방지와 방송사고에 대한 대응

III

민주적 시민교육의 수행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교육의 출발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교육방송 EBS는 민주주의, 자유, 평등과 같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요구하는 주요한 사상과 원칙 등을 조명해 내는 민주적 시민교육의 수행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적 과제인 통일과 정치, 경제, 문화의 민주주의와 같은 거시적 가치는 물론,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타인과 조화로울 수 있는 자유와 평등 의식을 높이는 편성을 제공하도록 한다.

4. 정확성과 공정성

◆ 기본 원칙

고도로 강화된 미디어 확산성으로 인해 정보의 홍수, 허위정보의 범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의 교육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균형있는 인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EBS는 정확성(accuracy)과 공정성(impartiality)에 입각해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정확성은 사태에 대한 정보를 왜곡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공정성은 그 같은 사태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편향되지 않게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 두 가치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그 외의 EBS 제작규범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BS는 교육과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뉴스와 토론, 다큐멘터리, 픽션 등을 다룸에 있어 최대한 현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도록 한다. 현실의 미화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로 하여금 건전한 성찰과 생산적인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제작 중 혹은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시, 제작자는 정당하고도 빠른 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 잡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이 같은 과정은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편향되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제작자는 출연자의 선정, 화면구도, 사운드 바이트, 제목, 분량, 아이템의 배열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 진실은 정확한 정보 위에 기초해 있다.
-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 사실에 대한 중복 확인을 통해 정확성을 추구한다.
- 사안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 및 전문가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한다.
-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제작자 스스로 편향된 관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 갈등적인 사안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들의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소수의 의견과 생각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관련
협의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작에 관련된 사실 관계를 각 관련자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련자와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보도의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책임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
실천

공정성과 균형성

1. 진실은 공정성을 위배하지 않을 때 얻어진다.
2.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사안에 대한 상호 대립적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제작자는 그 이유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4. 시간적 한계가 있는 방송의 특성상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양적 균형을 이루기 어려울 때는 그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제작 또는 편집 기술 등으로 인해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한 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6.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7.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과 생각이 같은 취재원이나 사례만을 편향적으로 선택하여서는 안 된다.
8. 의도적으로 특정 사실을 생략하거나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위장해서는 안 되며, 그래픽의 왜곡, 앵글의 조작, 화면의 조작 등으로 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9. 제작자가 관찰자의 입장을 넘어 현실에 직접 개입해야 하는 경우,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실과 의견¹⁾

1.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할 경우,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구분하도록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가짜 뉴스

1.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인용 또는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 정치적 편향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3.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다른 곳에서 제공받은 정보나 영상을 활용할 경우, 주어진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참조

▶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1.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 ①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 ② 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 ④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적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3.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 프로그램이나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
5.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위하여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과 「심의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담·토론 프로그램

1. 대담·토론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토론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토론 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도록 한다.
4. 토론 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5. 대담·토론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 포함)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안 된다.
6. 대립되는 주제를 다룰 때 압력단체나 개인이 조직적으로 프로그램을 장악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객관성(정확성)

1.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안 된다.
2. 제작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이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사실에 기초한 정확성만을 내세우다가 사실의 전후관계나 전망, 판단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소홀히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 출처명시

1. 외부의 정보는 출처를 다변화하여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방송자료를 위해서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구분하여 방송 내용의 정확성을 기한다.
2.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 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기관이나 개인이 제공한 폐쇄회로 TV화면이나 녹음된 자료를 다룰 때는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5. 이해집단이 제공한 외부자료를 방송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 명시하도록 한다.

통계 및 여론조사

1.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 이미 공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3.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4.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전체 질문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자막 또는 음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거의 종료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가 종료된 후 방송하는 등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을 밝혀 방송할 수 있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①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③ 방송이 영상기술과 도표(그래프, 그림, 표 등)를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에는 경쟁자나 경쟁집단 사이의 차이가 과장 또는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7.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 여론조사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이니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8. 과학적 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일종의 인기투표 방식인 유사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
 - ① 오락프로그램의 인기투표와 같은 경우, 전국을 대표하는 체계적인 표본을 근거로 의견을 수집할 필요는 없다.
 - ② 유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그 조사가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에게 밝혀야 한다.
 - ③ 유사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편파성 논란에 주의해야 하며 설문 문항 결정 및 조사결과 발표 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오보와 자율규제

1. 오보와 분쟁발생의 방지를 위해 방송사 스스로 자율규제 방식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제작자는 오보와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심의 평가 담당부서의 사전,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3. 오보를 확인한 경우, 제작자는 데스크 및 책임 프로듀서와 협의하고 담당 부서장의 책임 아래 자체 정정보도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 시행하도록 한다.
4. 오보나 인권침해에 대해 시청자나 당사자의 항의를 받은 경우, 담당 제작자가 대응하고, 데스크 및 책임 프로듀서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5. 오보에 대한 사실을 엄밀히 조사하고 만약 EBS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사과와 대처 방법을 관련 부서장이 협의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 방송 혼동 방지와 방송사고에 대한 대응

1. 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이외에서 뉴스·공지사항·일기예보 등을 발표하는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보도 프로그램 등으로 오인되거나 실제 상황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사·보도·토론·운동경기 중계 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 중 일부가 사전 녹음·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한다.
3.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화격차의 해소



5. 다양성과 포용

- ◆ 기본원칙
- ◆◆ 관련 협의
- ◆◆◆ 실천
 - 사회통합
 - 성 평등
 - 문화의 다양성 존중
 - 장애인 출연자에 대한 편의 제공
 - 장애인 출연자
 - 장애인의 묘사
 - 노인
 - 표현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의 사과와 정정

6. 디바이드의 극복

- ◆ 기본원칙
- ◆◆ 관련 협의
- ◆◆◆ 실천
 - 사회의 소외계층 배려
 - 트랜스 미디어 확장
 - 다양한 플랫폼 유통

IV

문화격차의 해소

한국사회가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로, 지역과 계급 갈등에서 세대 및 젠더 갈등 등으로 분화되면서 문화 간 격차 해소가 중요한 교육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EBS는 차이를 인정하는 다원주의와 이를 통합적 시각으로 포용하는 태도, 기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계층을 살피고 치료하는 디바이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다양성과 포용

◆ 기본 원칙

다양성(diversity)은 문화적 표현의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인 동시에 다수의 의견 교류를 통한 민주적 공론장 형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가치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의 목소리가 정책판단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계층과 지역의 가치와 더불어 문화, 세대, 젠더, 이념 다양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 이 같은 다양성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이자 가치로 묶어내는 포용(inclusion)을 통해 사회적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포용은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어떤 통일된 가치를 형성해가는 진행형의 통합적 과정이다.

EBS는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의 포용 및 관용 수준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 다양성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은 교육의 일차적인 가치이다. 이를 위해 EBS는 소재와 주제, 등장인물, 포맷, 이야기의 전개 등에서 개연성 있는 다양성을 실현하도록 한다. 또한 EBS는 이와 같은 다양성이 인정되는 속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포용적 가치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별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의 취향과 관점을 고루 반영한다.
-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 다양한 장르와 포맷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 고유하고(original) 창의적인 포맷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
관련
협의를

다양한 의견과 계층을 포용하기 위해서 편성 담당자 외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직이나 전문가를 찾아 내용적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 과정이 제작 특성상 어려울 경우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혹시 사회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내용이 없는지 파악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실천

▶ 사회통합

1.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인종 간, 종교 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2.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연령, 종교, 출신 지역, 정치적 입장,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협력과 조화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논리가 지배적이기 쉬운 것이 여론 형성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방송이 담당해야 할 포용의 사회적 책무를 염두에 두도록 노력한다.
5. 사회의 문제에 대해 찬반 진영으로 나누어 졌을 때 EBS가 특정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면 민주사회의 공론장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6.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는 단순히 소수 대상 프로그램 일부를 편성하는 차원을 넘어 편성과 제작의 전 과정을 통해 일관되게 기획하고 방송하는 것임을 유념하도록 한다.
7. 차별은 사회통합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방송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차별은 은밀히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작자는 은연중에 차별을 표현하지 않도록 한다.
8. 소수자들도 골고루 참여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에서 시각적, 청각적 요소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장애인들의 권리와 존엄성의 보호에 유의해야 하며, 장애인을 문제 집단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배제해야 한다.
10. 노인 프로그램은 사회 전반의 흐름에 무관심해지고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적·신체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11. 방송 언어의 사용이나 영상 표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2. 북한이탈주민 및 귀순자 관련 인터뷰나 프로그램 제작 시 이들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13. 외국인의 명예, 프라이버시, 초상권은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제반 권리보호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한다.

14. 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흥미나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문화적 적응과 상호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15.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지 않도록 한다.

성 평등

1. 다양한 성(性) 정체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특정한 성(性)적 지향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3. 특정한 성(性) 정체성을 다른 성(性) 정체성보다 열등하거나 우등하게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性) 정체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도록 한다.
5.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지 않도록 한다.

문화의 다양성 존중

1.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2.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출연자에 대한 편의 제공

1. 출연자가 시각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확대 복사한 대본을 준비한다.
2. 지적 장애인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대본을 따로 만들어야 하며, 인터뷰를 할 때에도 전문용어나 외래어 등 어려운 용어는 쉽게 설명하도록 한다.
3. 사전에 방송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알려주어 대기 중이나 귀가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한다.
4. 장애인 출연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이들의 이동이나 소통을 도와주도록 한다.
5. 보장구나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에게는 따로 공간을 마련해 준다.

장애인 출연자

1. 지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 평소 방송에 접근할 기회가 적은 장애인도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적합한 출연자를 발굴하도록 노력한다.
2. 장애인 출연자는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고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한다.
3. 장애인 출연자에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형식,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다.
4. 출연 장애인이 청각 장애인일 경우 진행자는 그 장애인이 진행자를 인지하고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말을 할 때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입을 가리지 않는다.
5. 출연 장애인이 언어손상을 가진 경우, 가급적 짧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진행자는 장애인이 말을 할 때 교정하려 하지 말고 특정한 방향으로 그 의견을 몰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장애인의 묘사

1.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장애인의 방송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2. 장애인을 묘사하는 영상이나 용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 ①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한지 장애인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 ② 장애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닌 이상, 장애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하게 장애를 부각하거나 장애로 인한 환경을 과장, 축소하는 등 왜곡하지 않는다.
 - ③ 특정 장애 부위를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장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④ 장애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은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한다.
 - ⑤ 장애를 비하하는 언어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한다.
 - ⑥ 장애인이나 장애문제를 다룰 때에는 법률적인 규정에 기초하여 장애 관련 용어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작에 임한다.
3. 장애인에게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여 정보 전달과 일상생활의 연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장애인을 위한 방송인 한국수어통역방송,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4조(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노인

1. 노인을 표현할 때 단순히 효도의 대상으로 다루거나 노인에게 위로나 즐거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지양한다.
2. 노인 프로그램은 사회전반의 흐름에 무관심해지고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3. 사회가 나날이 고령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교육방송의 목적에 맞게 장기적인 취업과 생계 및 복지와 관련된 내용 등을 구성하여 방송하도록 노력한다.

표현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의 사과와 정정

1. 토론 프로그램 등 출연자가 즉흥적으로 행한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차별적 표현을 통해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의식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진행자는 사과하고 그 발언을 정정하도록 한다.
2. 프로그램에서 사과와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후에 동일 프로그램 혹은 유사 프로그램에서 이를 사과하거나 정정하도록 한다.

6. 디바이드의 극복

◆ 기본 원칙

국내외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의 어두운 곳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은 이런 측면을 외면하지 말고 인간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에 따른 정체성 격차는 물론 교육 격차, 정보 격차, 문화 격차 등의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EBS는 교육적 차원에서 ‘디바이드의 극복’(getting over divide)에 대한 편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EBS는 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교육 격차와 정보 격차,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제작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한 격차 해소는 물론, 격차를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도 그 같은 내용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접근(public access)을 포함한다. 특히 OTT, SNS 등 트랜스미디어가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서 EBS는 이 같은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발, 참여, 운영함은 물론 거기에 적합한 콘텐츠(재)가공에도 기여해야 한다. EBS는 방송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 차별이 생기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사회의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 방송프로그램의 소재와 주제, 출연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사회 소외계층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이 EBS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차별 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을 제공한다.
- 사회 소외계층을 배려하여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사회 소외계층의 취향과 관심,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 증진에 관심을 갖는다.

◆◆
관련
협약

방송 실무 책임자 외에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실천

▶ 사회의 소외계층 배려

1. 사회의 소외계층이 EBS 프로그램을 널리 시청할 수 있도록 기술적·물리적 지원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2. 소외계층을 다룬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성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트랜스 미디어 확장

1. 다양한 방식의 트랜스 미디어에 맞는 제작을 하도록 노력한다.
2. OTT, SNS에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구성하도록 노력한다.
3. 트랜스 미디어 시대에 EBS가 직접 서비스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4. 프로그램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되도록 적절한 기술표준을 제공하도록 한다.
5. 사회 소외 계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제공한다.

▶ 다양한 플랫폼 유통

1.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웹이나 모바일에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다. 특히 출연자와의 프로그램 출연 계약 등의 경우 다양한 플랫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도록 한다.
2. 웹이나 모바일 유통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상권 등 인격권에 관한 사항을 잘 살피도록 한다.
3. 방송 등급에 적합한 내용과 모바일 웹에 적합한 내용의 구분을 인지하고 이를 제작에 고려하도록 한다.
4. 최대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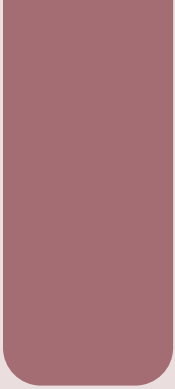
7. 자유와 책임

◆ 기본원칙

◆◆ 관련 협의

◆◆◆ 실천

- 방송의 품위
- 사생활 보호
- 취재원 보호
- 명예훼손 금지
- 인권 보호
- 공개 금지
- 범죄사건 보도
- 공개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
- 초상권의 침해
- 인격권 침해 방지 사항
- 법령의 준수
- 표현의 윤리성
- 생명존중 표현
-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항
- 성 표현
- 폭력 묘사
- 가학적·피학적 묘사
- 충격·혐오감 표현
- 범죄 및 약물묘사
- 자살묘사
- 재연·연출
- 의료행위 등
- 방송언어
- 광고효과
- 방송광고와의 구별
- 중계방송 등
- 간접광고
- 가상광고
- 방송광고 종류별 위반 사례
- 시상품
- 상품판매
-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 유료정보서비스
- 개인정보보호
- 동물권 인식



총론

7. 자유와 책임

◆ 기본 원칙

방송 제작에 있어 자유(freedom)는 모든 창작활동의 출발점이다. 제작자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 배제된 제작물은 정통성이 결여한 것이다. 또한 그런 자유는 다루는 사안에 대한 제작자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탐구, 사회의 미래지향적이고 선순환적 발전에의 기여라는 책임(responsibility)을 동반한다.

EBS의 모든 방송제작자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주어짐과 동시에 이에 수반하는 책임을 수행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EBS 방송제작자는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이에 따르는 공적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갖는다. 제작·편성의 자율성은 방송제작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성하는 과정에서 방송사 내·외부의 정치적·경제적 압력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언론의 자유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EBS는 외부의 정치적·경제적 압력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성한다(외적 자유). EBS의 방송제작자는 방송사 내부의 편성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 경영진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성한다(내적 자유). EBS의 모든 방송제작자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제작·편성을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EBS 방송제작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사회적 파장과 효과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제작과 편성 책임자와 협의하여 방송의 결과가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

◆◆
관련
협약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은 각 담당 책임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특히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품위와 질적 수준의 문제에 대해 제작팀은 물론 제작부서장과 협의한다.

◆◆◆
실천

▶ 방송의 품위

1.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공영방송으로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공영방송은 가치관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유아·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시청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방송 프로그램 품위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EBS는 시청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의식을 방송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4. 다양한 개인의 창의적 표현을 억압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말을 오염시키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명목 하에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인 화면과 사실을 적시하여 혐오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한다.
6. EBS의 제작자 또는 관계자는 일상적인 방송활동에서도 스스로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7. EBS 근무자 및 관계자는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 사생활 보호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지 않도록 한다.
2.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3.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4. 기존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나 전부를 이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최초 촬영과 방송 당시에는 당사자가 동의했어도 시일이 흐른 후에 다시 방송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재활용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취재원 보호

1. 취재원 보호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제작자가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
2. 그러나 법률 상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되었을 때는 취재원에게 설득력 있는 원칙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 신뢰성 있는 보도를 위해서는 취재원을 밝혀야 하는데, 이는 책임 있는 보도와 오보, 정보조작 등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공공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나 공인이 제시한 학술적, 정책적 분석과 전망을 보도할 경우 취재원을 명확히 밝히도록 한다.
4. 부조리와 비리의 폭로, 고발 등 공익제보와 관련된 취재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하고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명예훼손 금지

1.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 포함)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3.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사실의 적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표현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표현방법에 따라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진실한 사실 적시에도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을 주의해야 한다.
5.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다른 매체를 인용, 보도 한 경우에도 전파자의 책임이 면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의 명예훼손도 주의하도록 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인권 보호

1.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5. 보도 프로그램의 경우, 취재 대상자의 명예·프라이버시·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하며, 특히나 청소년 관련 범죄, 성범죄 또는 사건의 피해자를 다룰 때는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6. 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출연자가 차별적 표현을 하여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의식을 조장하는 경우, 진행자는 즉시 해명한 후에 사과 하고, 그 발언을 정정하도록 한다.

▶ 공개 금지

1. 범죄사건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서 당사자(청소년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청소년인 경우 그 인적사항
 -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 ③ 피고인, 피의자, 혐의자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보호자 및 친·인척의 인적사항
2. 범죄사건의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및 범죄사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은 개인의 인적사항 및 단체의 명칭·주소를 동의 없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요건

법원은 범죄보도에서 익명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수사당국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범죄사건 보도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시효가 만료된 범죄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보도할 때에는 수갑 등에 묶이거나 수의(囚衣) 등을 입은 상태를 정면으로 근접 촬영한 장면 등을 통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공개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

1. 명예훼손과 다르게 단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손상되는 경우의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프라이버시(인격권) 침해로 간주 될 수 있다.
2. 방송을 제작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소극적으로 도청·감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상대방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인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 그대로 공개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4. 다만 공적인 인물의 공적인 사실이라는 공익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
5.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① 개인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
 - ② 손님을 가장해 촬영·녹음 하는 경우
 - ③ 본인의 허락 없이 알려지지 않은 가족관계, 불미스러운 과거 경력을 보도하는 경우
 - ④ 사전에 동의 없이 전화·대화를 녹음하거나 개인의 편지를 발송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출력하는 경우

초상권의 침해

1. 초상권은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단계에서도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초상권 중에 촬영 및 작성 거절권(얼굴·기타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 할 권리)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3. 초상권 중에 공표 거절권(촬영된 초상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4. 초상권 중에 초상 영리권(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5. 공인은 일정한 초상권 공표에 대해서 감수해야 하지만 본인과 상관 없는 내용의 보도에 관해서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작자는 기사내용과 화면이 다를 경우에 적절한 표시로 그 사항을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6. 일반인의 초상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 ① 복수의 인물이 촬영되는 경우로서 보도대상자 이외의 인물이 방송되는 경우
 - ② 불특정 다수의 인물을 촬영·방송하는 경우
 - ③ 과거의 자료영상에 포함된 특정 인물의 모습을 사용할 경우
7. 재난·재해 피해자나 유가족, 기타 민·형사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촬영 또는 방송을 거부할 경우, 이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인격권 침해 방지 사항

1.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성 요건인 공적인 인물과 공적인 사실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당사자를 불특정 인물로 표현해야 한다.
2. 공인(재능이나 명성, 직업 때문에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인물이 된 사람을 뜻한다. 정치인, 선출직 공직자, 정부 관리뿐 아니라 운동선수, 연예인, 주요 인사, 덕망 있는 인사 등)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자신의 프라이버시 공개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해서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적 공간이나 비밀 등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3. 공적사실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한다. 보도적 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은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4. 법원은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즉, 상당성이 있는 경우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당성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재를 할 때 아래 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 ① 행위자가 누구인가?(일간신문, 주간신문, 방송 등 발행 또는 보도 주기에 따른 특성)
 - ② 신속성을 요하는 기사인가?(신속성을 요하는 보도 vs 기획기사)
 - ③ 취재원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 ④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
 - ⑤ 제보자의 제보 이외에도 이를 소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는가?

법령의 준수

1.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안 된다.
3. 국내외의 다른 작품을 표절하여서는 안 된다.

표현의 윤리성

1.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2.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3. 그 외에 사회적 원칙과 규칙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생명존중 표현

1.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2. 불가피하게 인신매매, 유괴, 성매매,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모방과 혐오의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항

1.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혹은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①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 ②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 ③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 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 ④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성행위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과도한 표현
 - ⑤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2. 시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인 화면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회적 혐오감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제작자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지나치게 드러냄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역기능에도 유의해야 한다. 제작자는 사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좋은 일에 대한 칭찬과 나쁜 일에 대한 폭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품위 있는 방송은 시청자가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고, 옳은 판단과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므로 공영방송으로서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5.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참고 사항

드라마나 오락, 예능 등의 프로그램은 욕설이나 비속어에 대해 무음·비프음 처리한 경우라고 해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만큼, 제작 과정에서부터 방송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시사·보도의 사건 현장 또는 다큐멘터리 등에서 녹취한 내용 중 욕설이나 비속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무음·비프음 처리하여 방송할 수 있다. 기존 제작된 노래나 영화 등의 가사·대사에 욕설이 있는 경우 역시 해당 부분을 무음·비프음 처리하여 방송할 수 있다.

성 표현

1.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2.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되며, 성을 의도적으로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안 된다.
3.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전체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①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 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 장면
 - ②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 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 장면
 - ③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 ④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 장면
 - ⑤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 장면
 - ⑥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4. 가족 시청 시간대(평일 오후 7시~10시/주말 오후 6시~10시)에는 성관계의 묘사가 등장하지 않도록 한다.
 5. 성인 시청 시간대일지라도 지나치게 노골적이거나 변태적인 성행위 묘사, 비윤리적인 애정관계 설정은 삼가야 한다.
 6. 성적 행동의 묘사는 분명하고 합리적인 편집 방침에 따라야 하고, 불필요하게 등장해서는 안 된다.
 7. 성폭력에 관한 영상은 가능한 한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8. 드라마 내용의 흐름상 필요하거나 실제 사건을 재연함에 있어서도 사실성의 추구에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불쾌하거나 충격적인 성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9.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남녀의 과도한 신체 노출 장면이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폭력 묘사

1.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가학적·피학적 묘사

1.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안 된다.
2. 특히 예능·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극적인 장면을 얻기 위해 출연자를 위험한 상황에 내몰거나, 웃음이나 재미를 목적으로 가혹한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은 표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충격·혐오감 표현

1.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 ①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 ②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 ③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 ④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 ⑤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 ⑥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범진 및 약물묘사

1.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안 된다.
2.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 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범죄행위를 미화하는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4. 불필요하게 공포감과 잔혹함을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5. 가족 시청 시간대(평일 오후 7시~10시/주말 오후 6시~10시)에 잔혹한 폭력을 다룬 프로그램과 예고가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자살묘사

1.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3.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자살자(자살자로 추정되는 자와 자살 미수자를 포함)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5. 위 1, 4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재연·연출

1.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때에는 재연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변조·인터뷰 형식 등을 통해 실제상황인 것처럼 연출하는 것을 말함)을 사용하여 과거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할 경우에는 시청자가 이를 실제상황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출한 화면임을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3. 허구의 소재를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도 2를 준수하여야 하며, 실제 존재했던 사건·사고가 아님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4.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하거나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할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되며, 그 피해자·가해자 또는 당사자 등의 배역에 어린이를 출연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료행위 등

1.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 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
 - ②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 ③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 ④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
 - ⑤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 ⑥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 ⑦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 ⑧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의료법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②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 등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의료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 편지, 엽서, 전화, 온라인, 소셜 미디어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①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 ② 상담자 또는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4.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 또는 약사를 선정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
5. 의료인 또는 약사를 소개할 때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력·전문 과목 등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 사항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고, 「약사법」에 따른 약사는 약사 및 한약사이다.

6.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한 특정인의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밝히도록 한다.

방송언어

1.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고의적으로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된다.
2.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고 사항

기존 제작된 노래나 영화 등은 가사·대사에 욕설이 있을 경우 효과음 처리하여 방송할 수 있으나,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드라마, 오락·예능 등은 제작과정에서부터 방송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발음이나 어감이 욕설 등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도 규제 대상이 된다. 다만 드라마 등 일부 장르의 경우,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비속어나 욕설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이는 장르, 방송시간대, 시청등급 등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방송언어 심의기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된다.

3. 시청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한다.
4. 출연자들의 사담이나 반말을 지양한다.
5. 부도덕한 이야기, 성적인 비유, 사회의 통념을 깨는 말을 삼간다.
6. 성(性), 국적, 연령, 직업, 지역, 종교, 학력, 질병, 장애 유무 등과 관련한 차별적 언사를 해서는 안 된다.

7. 무례한 언사를 해서는 안 되며, 출연자 간의 인신 공격적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하를 하지 않는다.
8. 상업광고와 관련한 직간접 홍보성 언어 사용을 금한다.
9. 비속어, 은어, 인터넷 조어, 혐오 표현(hate speech) 등을 자막으로 표기하는 것을 자제한다.
10. 북한 문제를 다룰 때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이름이나 지명은 고유명사이므로 북한식 표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유명사 이외의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11.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12.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안 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어순화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방송언어)

-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광고효과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하거나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협찬주 및 그의 상품·서비스·영업장소 등을 포함. 이하 ‘상품 등’으로 표기)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 (이하 ‘상품명 등’으로 표기)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 ②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 ③ 상품명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하거나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상품을 새롭게 제작하여 노출하는 내용

2.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 ② 상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 ③ 그 밖에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3. 보도·생활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에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 ① 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 ②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
- ③ 창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예상수익, 사업전망, 관련 상품 등의 효능·효과 등을 보장 또는 과장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은폐·축소하는 내용

4.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거나, 협찬주의 영리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5. 상품 등 또는 상품명 등의 노출이나 언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상품 등을 의도성 없이 배경·소품으로 노출하는 내용
- ②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하는 내용
- ③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에 따른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 ④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따른 가상광고 또는 가상광고 상품명 등에 관한 내용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3.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②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그 밖에 간접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③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난등에 대한 방송이나 긴급속보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하게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다만,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되거나, 운동경기(이와 관련된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계하는 장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운동경기의 경우 선수와 심판의 장비를 포함한다) 위에 노출하는 내용. 다만, 개개인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청객이나 관중 위에 노출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중요한 배경·소품, 자막 위에 노출하거나 이를 변형·왜곡시켜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5. 그 밖에 가상광고를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② 가상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가상이미지의 삽입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8. 3.>

1. 가상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가상광고 자막은 제외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2. 가상광고 상품 등의 거래정보(가격, 구성, 위치·연락처, 행사기간 등 거래와 직접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를 자막(가상광고 자막을 포함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언급하는 내용
3. 가상광고 상품 등의 구매·이용 권유정보(품질·효능·기능·보증 등 구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업적 표현을 말한다)를 자막(가상광고 자막을 제외한다),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언급하는 내용

4. 출연자 등이 가상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실제로 시현하는 내용
5. 그 밖에 프로그램 안에서 가상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 ③ 가상광고가 출연자 등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구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상광고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방송광고와의 구별

1.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안내·고지 자막

1. 상품 등을 자막으로 안내·고지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재난·질병·세무 또는 선거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 ② 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로써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행사. 다만, 행사명·일시·장소 등 행사 안내를 위한 고지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 ③ 사업자의 자사 직원채용·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자체 정보
 - ④ 수도물·전기·가스 중단, 지역 공사 안내, 성금모금 또는 긴급 수혈 등 민생 관련 안내 정보
 - ⑤ 그 밖에 시청자가 알아야 할 공적 이익이 있는 정보로서 사업자나 기타 특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보 및 방송법령에 따라 고시된 공익적 목적의 정보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의3 제1항 제2호의 안내·고지 자막 및 자사 프로그램 예고 자막을 지나치게 크게 고지하거나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의3 제1항 제2호

사업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공익행사로써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행사. 다만, 행사명·일시·장소 등 행사 안내를 위한 고지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중계방송 등

1.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경기장·행사장 등에 실제 설치된 광고물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반복하여 노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2.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하여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단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3. 사업자는 협찬주 및 경기·행사 등의 주최·주관단체의 후원사와 관련되는 상품명 등을 반복하여 부각시킴으로써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4. 사업자는 후원사 명칭 등에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 등이 포함된 경우 그 노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방송광고 금지 품목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 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 정보 및 문자정보(성기구 포함)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3. 의료기관(병원 등)
14.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15. 종교에 관한 방송광고 중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거나 종교 관련 상품판매 이외에 종교·신앙에 대한 광고
16. 법령이나 선관위 결정사항을 제외한 정당 광고
17. 기타 불법 상품에 대한 광고

5. 사업자가 중계방송의 결과를 보도하거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3, 4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간접광고

1. 간접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 ②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 ③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참고 사항

간접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이며, 방송광고의 한 종류임에 따라 일반 소품 등의 노출과는 다소 차별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간접광고 상품 등은 광고효과를 위해 다소 부각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다만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게 배치하거나 작위적으로 부각시켜 시청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간접광고 상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맥락상 과도하게 방송해서도 안 된다.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해당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은 제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 ② 간접광고 상품 등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간접광고 상품 등을 포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 ③ 그 밖에 간접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3. 간접광고 상품 등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가상광고

1.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① 재난 등에 대한 방송이나 긴급속보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 ②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하게 노출하여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다만,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되거나, 운동경기(이와 관련된 행사 포함)를 중계하는 장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운동경기의 경우, 선수와 심판의 장비 포함) 위에 노출하는 내용. 다만, 개개인의 얼굴 식별이 어렵고,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청객이나 관중 위에 노출할 수 있다.
- ④ 프로그램의 중요한 배경·소품, 자막 위에 노출하거나 이를 변형·왜곡시켜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 ⑤ 그 밖에 가상광고를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게 노출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내용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노출하여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2. 가상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법령이 허용한 가상 이미지의 삽입을 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가상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가상광고 자막은 제외),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내용
 - ② 가상광고 상품 등의 거래 정보(가격, 구성, 위치·연락처, 행사기간 등 거래와 직접 관련된 정보를 말함.)를 자막(가상광고 자막 포함),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언급하는 내용
 - ③ 가상광고 상품 등의 구매·이용 권유 정보(품질·효능·기능·보증 등 구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업적 표현을 말함.)를 자막(가상광고 자막 제외),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하여 노출·언급하는 내용
 - ④ 출연자 등이 가상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실제로 시현하는 내용
 - ⑤ 그 밖에 프로그램 안에서 가상광고 상품 등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 음향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특징·장점을 묘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3. 가상광고가 출연자 등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구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가상광고의 노출을 통해 나타나는 상업적 표현의 허위·과장 여부 및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방송광고 종류별 위반 사례

1. 아래 위반 사례를 참고하여 방송광고 법률을 준수하도록 한다.
2.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 고지 시에 편성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위반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자막광고 크기 허용 기준인 1/4 초과 시 법률 위반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여야 한다.
3.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전후 방송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광고방송” 자막 표기가 없거나 자막 크기가 화면 크기의 1/64(전체 화면의 1.56%) 미만일 경우 위반이므로 이를 잘 지키도록 한다.
4.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또는 크기가 1/16(전체화면의 6.25%) 미만인 경우에도 고지 위반이므로 이를 주의하도록 한다.
5.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자막형 가상광고 노출이 있는 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아닌 간접광고 자막고지 표기를 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되므로 꼭 광고의 종류를 확인하여 적절한 문구를 노출하도록 한다.
6. 가상광고 노출 시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 포함 고지를 노출하지 않고 프로그램 중간에 노출 시 위반이므로 꼭 프로그램 시작 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7. 그래픽 등 가상 이미지 형태의 상품, 서비스, 인물, 신체 일부, 배경 등을 프로그램 내에 삽입하는 형태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가상광고로 노출된 것으로 보고 크기를 한정하는데 이때 가상광고 크기가 화면의 1/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동시 노출 시 두 개 유형의 광고 크기의 합이 화면의 1/4초과 시 크기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9. 다른 법령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의 가상광고 노출 시 위반이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시상품

1. 출연자, 방청인 또는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 또는 상금 등 시상품의 수준이나 제공방식으로 사행심 또는 위화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시상품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시상품과 관련되는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협찬주 또는 광고주 등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으로 사용하거나 시상명과 함께 방송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거나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관·후원하거나, 사업자 이외의 자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스포츠 경기를 사업자가 중계방송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가상광고주의 상호, 상품명, 서비스명 등을 시상명과 함께 방송할 수 있다.

▶ 상품판매

1.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 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 기부금품의 모집 규제

1. 사업자 자신 또는 그 종사자의 이익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사항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
2.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방송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 모집 목적, 모집 기간, 모집 금품의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송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안 되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4. 기부금품을 모집한 방송은 모집 금액, 사용 주체,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을 포함한 기부금품의 처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유료정보서비스

1.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정보서비스 안내 시(수 회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 프로그램마다)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한다.
3. 방송 중 이용된 유료정보서비스가 종료된 때에는 이를 자막 및 음성으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4. 생방송에 한하여 유료정보서비스가 이용된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에서는 그 이용 관련 자막이 고지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재방송 등에서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조치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인정보보호

1.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출연자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 등의 개인정보는 수집과 관리단계에서 철저히 보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언제든지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취급한다.
3.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시청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률검토 및 보안성 검토 관련 부서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동물권 인식

1. 프로그램 제작 시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및 보호·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제작 시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거나 위협할 정도로 무리한 촬영을 하지 않는다.
3. 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동물을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풀어놓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친환경 제작

1. 프로그램 제작 시 현장의 식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촬영 현장은 최대한 원형을 유지하여 이용하고, 촬영 후에는 현장을 최대한 원상태로 복구한다.
2. 생태계 보전 지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 촬영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고, 가급적 동행하여 진행한다.
3. 개발 수요와 환경 보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환경을 보존했을 때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 환경 오염의 영향에 대하여 방송할 때에는 오염 관련 세부전문가를 찾아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5. 프로그램 세트, 소품 제작 시 친환경 인증·지속가능 원자재를 우선 고려하고 사용 종료 시 폐기물을 최소화한다.
6. 사용 종료된 의상, 패브릭 소재를 재사용 가능하도록 위생 관리하고 가치를 재창출한다.
7. 종료된 프로그램의 세트, 소품 중 재사용,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보관, 폐기한다. 분류된 세트, 소품은 종류, 형태, 크기에 따라 기록하여 재사용,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 촬영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재활용과 영구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한다.
8. 새로운 방송장비의 도입 및 운영 계획을 세울 때는 탄소 배출 절감, 자원 절약, 대기 오염 감소 방안을 고려한다.

9. 방송장비를 구매할 때는 저발열, 저전력, 효율적인 환기 및 배출 시스템, 소음 감소 등 친환경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우선 도입한다. 도입된 방송장비는 상시 필요한 장비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 장비의 수명을 극대화한다.
10. 프로그램 제작 콘텐츠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 전송 및 저장 시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

EBS

제작가이드라인

펴 낸 날 2024년 6월 13일

펴 낸 곳 EBS

발 행 인 김유열(EBS 사장)

기획·편집 홍정배 센터장(EBS 정책기획센터)
봉미선 부장(EBS 정책기획센터 정책기획부)
이효림 차장(EBS 정책기획센터 정책기획부)

주 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문 의 전 화 1588-1580

팩 스 031-901-2361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